

	원격수업지원센터 운영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21. 02. 0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교육혁신처 원격수업지원센터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 원격수업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업무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
2. 원격교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 연구, 개발 및 지원
3. 원격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습법 연구, 개발 및 지원
4.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및 지원
5. 원격수업(교내·외 원격수업, 공개강좌 등) 콘텐츠 개발 및 운영
6. 센터 운영사업 성과분석, 환류 체계 구축 및 실행
7.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
8. 원격학습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
9. 그 밖에 원격교수학습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②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구성) 센터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빙교수, 행정직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며 원격강의규정의 위원회 조항을 따른다.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 계획 및 기획에 대한 사항
2. 원격교육 강좌 품질 관리에 대한 사항
2. 원격수업 관련 콘텐츠 및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원격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
제7조(저작권) ① 본교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강의 콘텐츠 및 지식재산 소유권은 본교에 속한다.

② 강의콘텐츠 제작 시 저작권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자료의 무단 복사나 활용은 허용하지 아니하며 저작권 문제 발생 시 책임은 개발교수에게 있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1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.